

2026년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강원특별자치도내 미취업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창업 활동 지원을 통한 일자리 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2026년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구, 강원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도내 미취업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2월 9일

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I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 재참여 제한 2년('24년~25년 사업 참여자 참여 불가)

- (주 소 지) '26.2.9(월)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

- (나 이) '26.2.9(월) 기준 만 18세 이상 ~ 45세 이하

* 1980년 2월 10일 ~ 2008년 2월 9일 출생자

- (졸 업) '26.2.9(월) 기준 최종학력 졸업(중퇴)자

* 대학 최종학년 재(휴)학생은 참여 가능

- (취업상태) '26.2.9(월) 기준 미취업자

* 미취·창업 기준 : 주 36시간 미만 근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 (가구소득) 가구원의 가구소득 인정액이 연령별 기준중위소득 요건 충족

	연령 기준	기준중위소득 범위
가구소득 인정액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120% 초과~180% 이하
	만 35세 이상 ~ 45세 이하	180% 이하

○ 지원내용

- (취업준비쿠폰)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포인트) 지원
 - * 지원항목 : 교육비, 교재(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식비, 교통비, 면접활동비 등
 - * 단, 자산성 물품(전자기기, 가전제품, 생활용품, 기타 장비 등) 구매 및 구직활동과 무관한 사용 제한
- (취업성공금) 지원금 수급 중 취·창업하여 3개월간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 원 지원
 - * 단, 쿠폰(포인트)을 6개월 전액 지원받고 취·창업하거나 주소지 및 실 근무지가 도외인 경우는 제외
-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정보 안내, 역량강화교육, 취업컨설팅, 사후관리 등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 지원방법 : ① 온라인 포인트로 사용, ② 체크카드 사용 후 환급(현금)방식

- (첫 달) 선정 공고 이후, 예비교육 이수하고 제출한 구직활동계획서가 검토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익월 쿠폰(포인트) 지급
 - * 익월 1일 이후 지급될 수 있음
- (둘째 달 이후)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취업 여부 확인 후 지급
 - * 구직활동 보고서 미제출 또는 반려 누적 시, 쿠폰(포인트) 미지급 또는 지원 중단

○ 신청기간 : **‘26. 2. 9. 09:00 ~ ‘26. 3. 31. 23:59** *신청서류 7~8pg 참고

○ 발 표 일:

구분	심사대상 기간	발표일
1차 발표	2.9~2.28 최종 제출분	3.20
2차 발표	3.1~3.31 최종 제출분	4.20

※ 신청 시 유의 사항:

1. 선착순 모집으로, 모집 조기 마감일 될 수 있습니다.
2. 접수기간 내 1회만 신청 가능. (예시) 2.9~2.28. 신청 후 1차 발표에서 미선정된 경우 3.1~3.31.기간에 2차 발표 심사분으로 재신청(서류보완 등)은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강원일자리정보망 <https://job.gwd.go.kr/gwjob>)
- 선정방법 : 지원대상 요건 심사 후 적격 여부 판단
 - * **최종제출 서류를 지원대상 요건 기준으로 순서대로 심사하여 선정합니다.**

II

신청자격

* 참여자격 판단 시점은 **모두 공고일('26. 2. 9.) 기준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 '26.2.9(월)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
 - 거주지 요건은 지원금을 받는 모든 기간동안 충족되어야 하며,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도외로 거주지 변경 시 중단 사실을 알려야 하며, 지원이 중단됩니다.**
- '26.2.9(월) 기준, 만 18세 이상~45세 이하
 - **1980년 2월 10일 ~ 2008년 2월 9일 출생자**
- '26.2.9(월) 기준,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상 졸업(중퇴)자
 - '26년 대학 최종학년 재(휴)학생 및 원격대학, 학점 인정제 과정 이수의 경우 참여 가능
- '26.2.9(월) 기준, 미취(창)업자
 - 미취(창)업 기준 : 공고일 기준, 월평균 주 근로시간 36시간 미만이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 *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 36시간 이상 근로 시, 취업자로 간주
 -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자로 간주
 - *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미취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 참여 가능
- 가구원의 가구소득 인정액이 연령별 기준중위소득 범위 요건 충족
 - '26.2.9(월) 기준 직전 3개월 (**25년 11월, 25년 12월, 26년 1월**) 가구원의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부과)액 합산 금액**이 연령별 각 [표1] ~ [표2]의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표 범위에 해당해야 함

※ 만 18세 ~ 34세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지만 재산 기준 미달 및 공무원 시험준비 등으로 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선발이 제외된 대상은 관련 증빙자료를 (불인정 통지서와 최근 1년간 공무원 시험 접수증) 제출하셔야 지원 가능합니다.

* 불인정 통지서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심사 결과, 수급 자격 불인정 통지서를 의미하며, 수급 자격 모의 산정 결과로는 증빙되지 않습니다.

* 단, 불인정 통지서의 사유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기 참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기간 이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가능)

* 가구원 산정은 가족관계증명서의 가구원 기준(등본 기준 아님)

[표1] 만 18세~34세: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건강보험료 범위에 해당되어야 함

(단위 :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6년 기준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120% 건강보험료	직장	110,969	183,365	232,890	284,951	327,091	374,300
	지역	32,899	123,644	168,649	233,292	284,606	338,641
	혼합	-	185,675	236,378	290,169	337,647	390,974
180% 건강보험료	직장	166,263	274,221	348,913	432,308	490,306	584,741
	지역	104,256	220,149	308,246	404,529	473,662	579,249
	혼합	-	279,461	360,410	457,613	535,512	634,423

[표2] 만 35세~45세: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료 범위에 해당 되어야 함

(단위 :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6년 기준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180% 건강보험료	직장	166,263	274,221	348,913	432,308	490,306	584,741
	지역	104,256	220,149	308,246	404,529	473,662	579,249
	혼합	-	279,461	360,410	457,613	535,512	634,423

* 건강보험료는 본인부담금(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만 해당됨

* 가구원 수 및 가구소득 확인 범위 기준

※세부 예시는 [붙임1] 참조

- 가구원은 등본이 아닌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 신청자가 미혼인 경우

- 가구원 수는 기본 3인(부, 모, 본인)
- 형제·자매 포함 여부는 선택사항, 조부모는 미포함
(가구원의 소득에 따라, 형제·자매 포함 여부 선택 가능)

• 신청자가 미혼이며, 한부모 가정일 경우

- 가구원 수는 2인(본인, 함께 사는 부(또는 모))
- 형제·자매 포함 여부는 선택사항, 조부모는 미포함
(가구원의 소득에 따라, 형제·자매 포함 여부 선택 가능)

• 신청자가 기혼인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 중인지, 아니면 별도 가구로 독립해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 중인지에 따라 달리 산정

* 신청자의 가구소득과 건강보험료 기준표 간 확인 방법

(예시) 신청자가 만 32세 미혼이고 가구원이 3인(본인+부+모)일 때,

공고일 전 3개월 부(父)는 직장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 모(母)는 지역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 본인은 부(父)의 피부양자로 되어있을 경우

(확인) 부(직장)의 공고일 전 3개월 평균 납부액 + 모(지역)의 공고일 전 3개월 평균 납부액] 이 [표1]의 3인 혼합액 기준 120%(236,378원) 초과 ~ 180% (360,410원) 이하 건강보험료에 해당되는지 확인

* 신청 지원 제외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 * 2024~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 참여자
- * 실업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주 36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있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미취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 참여 가능
-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 동시 참여 불가, 순차 참여 제한 기간 6개월 경과 후 참여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중단한 경우에도 6개월 경과 후 참여 가능)
√ 유사사업은 월 50만 원 이상 또는 총 지급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 내일배움카드 등 정부 지원 훈련 종료 후 6개월 미 경과자
- * 학업 또는 군 복무, 건강 등의 사유로 취업이 어렵거나 취업 의사가 없는 경우
√ 공고일 기준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대학원 등 학교의 재학생 및 휴학생
(단, 대학 '26년 최종학년 재(휴)학생 및 원격대학, 학점 인정제 과정 이수 경우 참여 가능)

《타제도 중복참여 가능 여부》

사업명	동시참여		순차참여	
	가능	불허	가능	
			종료 후	6개월 경과 후
생계급여		○	○	
실업급여		○	○ (종료 다음 달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		○
내일배움카드	카드 발급 후 훈련 미참여	○		
	훈련 참여		○	○
기타 정부 지원 훈련		○		○
여성 직업교육 훈련		○	○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	주 근로시간 36시간 미만	○		
	주 근로시간 36시간 이상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 등		○		○

Ⅲ

신청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만 가능 / 모집 기간 내 최종 제출되지 않은 신청서는 심사 제외대상

① 강원일자리정보망(<http://job.gwd.go.kr/gwjob>) 홈페이지 접속하여 개인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후 신청 가능

※ 강원일자리정보망 구직등록 방법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인재정보관리]-[내 인재정보 등록] 클릭

(강원일자리정보망에 구직등록이 안 되어 있을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② 홈페이지 상단의 “지원정책” 선택 후, “청년구직활동지원” 클릭
- ③ “2026년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 신청” 안내내용 상세보기 클릭
- ④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 내용(모집공고문, 제출서류 발급 안내문 등) 확인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구직활동계획서 등) 및 제출서류 첨부해서 최종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 시작일(26.2.9.) 이후 발급분만 인정 / 필수 서류 미비로 인한 심사 불가 시, 탈락 처리

제출서류	유의사항	
필수	① 주민등록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게 발급 - 주소변동 이력(5년 이상),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최종 전입 일자가 확인되어야 하며, 여러 장일 경우 모두 다 첨부 *주민등록등본이 아닌 초본으로 제출
	②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 모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게 발급 - 가구원에 부, 모만 포함시킬 경우, 본인 기준으로 발급 - 가구원에 부, 모+형제·자매를 포함시킬 경우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 - 기혼자가 부모님을 가구원에 포함시킬 경우 등본 추가 발급 - 가족관계증명 관련 사례별 추가 구비서류 목록은 【붙임 2】 참조
	③ 졸업(제적)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학교 졸업(제적)증명서 발급 - 가장 마지막으로 입학한 학교를 최종학교로 간주함 (검정고시의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 첨부) - 대학 최종학년 재(휴)학생의 경우 마지막 학년에 대한 증빙 가능 서류(성적증명서, 등록금영수증, 졸업예정증명서 등) 제출 필요
	④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 모두의 자격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 - 미혼의 경우 부모·본인 자격확인서 첨부 필수 * 형제/자매가 건강보험을 직접 납부하여 가구원과 소득에 포함시킬 경우, 형제/자매의 자격확인서도 제출 - 기혼의 경우 본인·배우자 자격확인서 첨부 필수
	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소득을 산정하는 가구원 모두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 * 가구원 3인(부·모·본인) 산정 시, 부·모·본인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⑥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11월, 25년 12월, 26년 1월 분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구원 모두의 납부확인서 발급·첨부 * 가구원을 3인(부·모·본인)으로 할 경우, 부·모·본인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보험료 미납으로 납부확인서가 미발급 될 경우, 납부고지서 제출

필수	⑦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상용)	- 공고일 기준 5년 이상의 이력을 포함하여 발급 * 상용이력으로 조회하여 발급 -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내역이 없다는 서류 첨부 (반드시 인적사항과 발급 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⑧ 개인정보동의서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첨부 * 【서식 2】 참고 - 가구원에 포함된 모두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하며 미동의 및 서명 누락 시 탈락 처리 * 가구원으로 부·모·본인을 넣었다면 개인정보동의서에도 부·모·본인의 동의 및 서명이 모두 필요함. * 만 14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 법적대리인(신청인 본인)이 동의 및 서명
	⑨ 구직활동계획서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기재 * 【서식 1】 참고 - 목표와 세부 활동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 (구직활동계획서의 경우, 지원자로 선정된 이후 재작성함)
해당시	근로계약서	- 공고일 기준, 주 36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 제출 필수 - 근로시간 및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 휴·폐업자는 휴·폐업 증빙 가능 자료(휴·폐업 신고서 등) 제출 필수 * 공고일 전, 후 발급분 모두 인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 제외대상 증빙서류	- 만 18세 ~ 34세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지만 재산 기준 미달 및 공무원 시험준비 등으로 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선발이 제외된 대상은 관련 증빙서류 (불인정 통지서와 최근 1년간 공무원 시험 접수증) 제출 필수 ※증빙자료 미제출자는 탈락 처리 * 공고일 전, 후 발급분 모두 인정

<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

- * 제출서류는 공고일(26. 2. 9.) 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 제출서류 발급방법은 【붙임 3】 참조
- *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한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JPG, PDF 파일만 첨부 가능)
√ PC 화면을 사진 찍어 제출하는 경우는 불인정 되오니, 반드시 출력본을 사진 찍거나 스캔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개 이상 파일을 첨부할 경우엔 압축파일로 올리시면 됩니다.
- * 가구소득 산정 관련하여 형제·자매 등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붙임 1】 을 참조하여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 제출
- * 심사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별도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V

선정기준

- 최종선정 : **공고 시작일 기준('26.2.9.)**, 선정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심사하여 대상자 선정

항 목	심 사 방 법
주소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지 확인
나 이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연령이 만 18세~45세인지 확인
졸 업	최종학력 졸업(중퇴) 또는 최종학년 재(휴)학생인지 확인
미취업상태	미취(창)업 상태인지 확인 * 주 36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할 경우,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 36시간 이상 근로 시, 취업자로 간주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자로 간주 *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미취업자로 간주하여 사업 참여 가능
가구소득	25년 11월, 25년 12월, 26년 1월분 의 가구원 전체 평균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납부(부과)액 합산 금액과 연령별 가구소득 산정표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확인

VI

지원 대상자 발표 및 예비교육

- 지원 대상자 발표(예정)
- 일시 : 1차(2.9~2.28 최종제출분) 2026. 3. 20
2차(3.1~3.31 최종제출분) 2026. 4. 20
 - 방법 :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 [지원사업] - [사업공고] - [일자리부]에 게시 및 개별 문자발송
* 대상자 지원 기간 : 1차(' 26.4.6~9.30) 2차(' 26.5.6~10.31)
- 예비교육(예정)
- 일시 : 1차 선정자 2026. 3. 23
2차 선정자 2026. 4. 23
 - 방법 : ZOOM 또는 네이버웨일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 내용 : 지원사업 목적 및 사업 운영 매뉴얼, 계획서/보고서 작성방법, 쿠폰(지원금) 사용방법, 참여자 필수 이행사항 안내 등

- 본 사업 신청 전, 강원일자리정보망에서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을 필수로 하시기 바랍니다. 구직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타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신청 자격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 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의 착오·누락, 허위 기재, 연락 불능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재사항과 제출서류를 정확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 신청 시, PC 사용을 권장합니다. 모바일 사용 시 기재사항과 첨부파일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수정은 신청기한 내에만 가능합니다. 최종제출 전에는 신청자가 자발적으로 수정 가능하며, 최종제출 후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임시저장 상태로 변경 후 수정 가능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해선 순차적으로 심사합니다. 사업 담당자는 심사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자의 요청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엔 탈락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 제외 대상(타 사업 중복, 재학, 취·창업자 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의 의무사항 불이행 또는 지원금 사용기준에 부적합하게 사용 시엔 지원 중단 및 선정 취소,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종료 후 5년 이내 위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도 환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정부, 타 지자체 등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본 사업 참여로 인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타 지자체 등의 유사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사업 신청 전 미리 확인하시어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 사업 운영 시,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사정에 따라 구직활동 보고서, 환급, 정산 등의 운영 일정이 변동 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사업 신청 후 대상자 선정 공고 전에 취·창업을 하게 된 경우 반드시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담당 부서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신청서류 및 구비(첨부)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일자리부 청년센터(033-256-9575, 9579, 9580)으로 문의 바랍니다.

【서식 1】 아래는 참고 서식이며, 온라인에서 신청서 작성 시 **온라인으로 작성**

구 직 활 동 계 획 서																																									
참여자 성명																																									
취.창업 희망 분야 또는 직업																																									
구직활동 목표 및 세부계획 * 목표 최소 2개~4개, * 목표별 세부계획 최소 1개~3개, 항목별 10자~50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목표1</td> <td>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능숙한 마케터가 되기 위해 관련 학원 수강을 하며 역량을 키워나갈 것임</td> </tr> <tr> <td>세부계획1</td> <td>2달 과정 포토샵 학원 수강</td> </tr> <tr> <td>세부계획2</td> <td>2달 과정 애프터 이펙트 학원 수강</td> </tr> <tr> <td>세부계획3</td> <td></td> </tr> <tr> <td>목표2</td> <td>취업의 기본 역량인 영어 실력을 늘릴 것임</td> </tr> <tr> <td>세부계획1</td> <td>토익 850점 달성 스터디 가입</td> </tr> <tr> <td>세부계획2</td> <td></td> </tr> <tr> <td>세부계획3</td> <td></td> </tr> <tr> <td>목표3</td> <td>자기소개서, 면접 컨설팅을 받을 것임</td> </tr> <tr> <td>세부계획1</td> <td>전문 컨설팅 의뢰하여 자소서 면접 컨설팅 진행</td> </tr> <tr> <td>세부계획2</td> <td></td> </tr> <tr> <td>세부계획3</td> <td></td> </tr> <tr> <td>목표4</td> <td></td> </tr> <tr> <td>세부계획1</td> <td></td> </tr> <tr> <td>세부계획2</td> <td></td> </tr> <tr> <td>세부계획3</td> <td></td> </tr> <tr> <td>목표5</td> <td></td> </tr> <tr> <td>세부계획1</td> <td></td> </tr> <tr> <td>세부계획2</td> <td></td> </tr> <tr> <td>세부계획3</td> <td></td> </tr> </table>	목표1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능숙한 마케터가 되기 위해 관련 학원 수강을 하며 역량을 키워나갈 것임	세부계획1	2달 과정 포토샵 학원 수강	세부계획2	2달 과정 애프터 이펙트 학원 수강	세부계획3		목표2	취업의 기본 역량인 영어 실력을 늘릴 것임	세부계획1	토익 850점 달성 스터디 가입	세부계획2		세부계획3		목표3	자기소개서, 면접 컨설팅을 받을 것임	세부계획1	전문 컨설팅 의뢰하여 자소서 면접 컨설팅 진행	세부계획2		세부계획3		목표4		세부계획1		세부계획2		세부계획3		목표5		세부계획1		세부계획2		세부계획3	
	목표1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능숙한 마케터가 되기 위해 관련 학원 수강을 하며 역량을 키워나갈 것임																																							
	세부계획1	2달 과정 포토샵 학원 수강																																							
	세부계획2	2달 과정 애프터 이펙트 학원 수강																																							
	세부계획3																																								
	목표2	취업의 기본 역량인 영어 실력을 늘릴 것임																																							
	세부계획1	토익 850점 달성 스터디 가입																																							
	세부계획2																																								
	세부계획3																																								
	목표3	자기소개서, 면접 컨설팅을 받을 것임																																							
	세부계획1	전문 컨설팅 의뢰하여 자소서 면접 컨설팅 진행																																							
	세부계획2																																								
	세부계획3																																								
	목표4																																								
	세부계획1																																								
	세부계획2																																								
	세부계획3																																								
	목표5																																								
	세부계획1																																								
	세부계획2																																								
세부계획3																																									
구직활동 인정범위	<p>(간접 구직활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업능력개발 훈련 또는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훈련을 받는 경우 2. 고용센터, 자치단체 또는 위탁기관 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3. 취업과 관련한 온.오프라인 상담.컨설팅 등을 받는 경우 4. 시장조사 관련 사업장 방문, 구인.구매 관련 활동, 임차 및 점포물색 관련 활동 등 창업준비 활동을 하는 경우 5. 취업 관련 그룹 스터디, 취업 관련 도서 구매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 <p>(직접 구직활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구인 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7.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 본 구직활동계획서는 정성평가 평가항목이기에 신중하게 작성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본 사업 참여자와의 상담, 대상자 선정 및 심사, 지원금지급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필요시 강원특별자치도, 사업 담당기관(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정부부처, 사업진행과 관련된 금융기관 또는 협력기관에 개인정보가 공유될 수 있습니다.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등 이력사항, 연락전화번호, 가족사항, 경력, 건강보험증 번호,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 건강보험 자격, 재산상황 등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관련 업무 종료일까지 사업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특별자치도, 사업 담당기관(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정부부처, 건강보험공단, 농협은행 및 협력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 가입 여부, 건강보험료, 가족 피부양자 여부, 재산,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 및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관리 등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국민건강보험(가입여부, 건강보험증 번호, 건강보험료, 수급자 인원, 지역 및 직장가입 구분) 현황,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관련 업무 종료일까지 사업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 신청·선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와 귀하 가족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2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홍 0 0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홍 0 0
홍 0 0	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홍 0 0
김 0 0	모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김 0 0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 만 14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 법적대리인(신청인 본인)이 동의 및 서명바람

【서식 4】

가구원 관계단절 사실 확인서

신청인 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연락처	
확인자 명 (민법 제777조상 친족의 범위내)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참여자와의 관계	
관계단절 내용,사유	
<p>확인자()는 위 내용과 같이 신청자가 부/모/배우자와 관계가 단절되어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고 있으며, 이에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합니다.</p> <p>신청자()는 만약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관련 규정에 의해 환수 및 추가징수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인)</p> <p style="text-align: right;">확인자 : (인)</p>	
<p>첨부서류 : 확인자 신분증(뒷자리 가리고 첨부), 관계단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붙임 1】 가구소득 세부 산정방법

○ 미혼일 경우

- **(원칙)** 가구원 수 및 소득 확인 범위 모두 “기본 3인(부·모·본인)”
 - *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포함 여부 선택(포함 시 가구원 수 + 소득에 모두 추가)
 - * 가구원 수 산정에 조부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확인)** 가구원 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소득은 공고일 전 3개월분 가구원의 건강보험 평균 납부(부과)액과 자격을 통해 확인

< 사례별 예시 >

*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 [가구원 수 3인]

→ 부+모+본인 건강보험료 확인

√ 가구소득 산정(예시)

- 부 : 공고일 전 3개월 평균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 165,000원 납부
 - 모 : 공고일 전 3개월 평균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55,000원 납부
 - 본인(만 30세) : 부의 피부양자로 25년 10월 1일 자로 자격 취득
- 계산 : 부(직장) 165,000원 + 모(지역) 55,000원 = 220,000원

→ [표] 만 18세 ~ 34세 가구원 수 3인 기준(혼합) 금액표와 비교하여
**기준중위소득 120%(236,378원)초과 ~ 180%(360,410원)이하에 해당
되므로 가구소득 적합**

* 한부모 가정인 경우(사별·이혼 등 불문) [가구원 수 2인]

→ 실제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본인 건강보험료 확인

√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실제 동거 여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동거하고 있는 부 또는 모 기준), 가구원 건강보험 납부액 또는 자격 등

*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가구원 수 1인]

→ 본인 건강보험료 확인

√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본인 건강보험 납부액 또는 자격 등

* 부·모·본인이 형제·자매 등의 피부양자인 경우 [가구원 수 4인 이상]

→ 부+모+본인+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 합산 확인

√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본인 + 형제·자매의 건강보험 납부액 또는 자격 등

※ 위의 모든 경우에서, 형제·자매 추가를 원하는 경우

- **가구원 수**에 형제·자매의 수를 더하고, **소득**에 형제·자매의 평균 건강보험료를 더함
 - √ 단, 형제·자매가 부모·본인 이외의 자의 피부양자일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예시) 형제·자매가 모의 형제(이모 등) 또는 부의 형제(할머니 등)의 피부양자일 경우, **건강보험료 소득은 0원**으로 간주

○ 기혼일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 중인지, 아니면 별도의 가구로 독립해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 중인지에 따라 달리 산정
- **(동거 중인 경우)** 가구원 수 4인(부·모·본인·배우자) + 자녀 수로 하고, 소득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 본인 + 배우자 확인
- **(독립한 경우)** 가구원 수는 2인(본인·배우자)으로 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구원 수 추가), 소득은 “본인 + 배우자” 확인
- **(확인)**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은 공고일 전 3개월분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부과)액을 통해 확인

< 사례별 예시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 중인 경우 [가구원 수 4인(+자녀 수)]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본인+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합산 확인

√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부모와 동거 여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본인+배우자의 건강보험 납부액 또는 자격 등

※ 위의 모든 경우에서, 형제·자매 추가를 원하는 경우

- 가구원 수에 형제·자매의 수를 더하고, 소득에 형제·자매의 평균 건강보험료를 더함

√ 단, 형제·자매가 부모·본인 이외의 자의 피부양자일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독립한 경우 [가구원 수 2인(+자녀 수)]

→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확인

√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건강보험 납부액 또는 자격 등

√ 가구소득 산정(예시)

- 배우자 : 공고일 전 3개월 평균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 153,000원 납부

- 본인(만 42세) : 배우자 피부양자로 20년 10월 1일 자로 자격 취득

- 자녀 2명 : 출생 이후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자격 취득

• 계산 : 가구원 수 - 4인 / 소득 - 배우자(직장) 153,000원

→ [표2] 만 35세 ~ 45세 가구원 수 4인 기준(직장) 금액표와 비교하여

기준중위소득 180%(432,308원)이하에 해당되므로 가구소득 적합

- 부 또는 모와의 관계단절로 개인정보제공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 (원칙)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는 것이 증빙 가능한 경우 가득 소득 산정대상 가구원에서 제외
 - * 관계단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서식 3】** 본인 소명서와 **【서식 4】** 사실확인서를 제출
 - * 주거를 달리함은 **주민등록 등본상 동일세대가 아님**으로 증빙하고, 생계를 달리함은 **건강보험이 분리**되어 있어야 인정 가능

< 사례별 예시 >

- * 이혼소송 중으로 사실상 부 또는 모와 관계단절
→ 이혼소송·심판 서류+주민등록 등본상 동일세대 아님+건강보험 자격확인서상 피부양 관계단절
- * 교도소 등 수감으로 관계단절
→ 수용증명서+건강보험 자격확인서상 피부양 관계단절(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될 필요 없음)
- * 부모가 사실상 이혼하였고 부 또는 모와 관계단절
→ 본인 소명서+조부모 등 민법상 친족의 사실확인서(신분증 사본 첨부)+주민등록상 동일세대 아님+건강보험 자격확인서상 피부양 관계단절
- * 오래전부터 부모와 관계가 단절되어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 경우
→ 본인 소명서+조부모 등 민법상 친족의 사실확인서(신분증 사본 첨부)+주민등록 초본상 지원금 신청 가능 나이(만 18세) 이전에 세대가 분리되었음을 확인+건강 보험 자격확인서상 피부양 관계단절

【붙임 2】 가족관계증명 관련 사례별 구비서류 목록

결혼	부	모	제출서류	비고
	생존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생존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주민등록등본 ^{주3)}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5)}	
	생존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부)+실종 등 서류 ^{주1)}	
	생존	재외국민·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주2)}	
	이혼 후 관계단절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민등록등본 ^{주3)}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5)} +주민등록초본 ^{주6)}	폐쇄인정 ^{주4)}
	이혼 후 관계단절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민등록등본 ^{주3)}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5)} +주민등록초본 ^{주5)} +주민등록초본 ^{주6)}	
	이혼 후 관계단절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부+모)+실종 등 서류 ^{주1)} +주민등록등본 ^{주3)}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5)} + 주민등록초본 ^{주6)}	
	이혼 후 관계단절	재외국민·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가족관계증명서(본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5)}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주2)} +주민등록초본 ^{주6)}	
	사망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민등록등본 ^{주3)}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5)} +주민등록초본 ^{주6)}	폐쇄인정 ^{주4)}
	사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미혼	사망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부)+실종 등 서류 ^{주1)}	폐쇄인정 ^{주4)}
	사망	재외국민·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주2)}	폐쇄인정 ^{주4)}
	재외국민· 외국인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모)+가족관계증명서(본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5)}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주2)} +주민등록초본 ^{주6)}	
	재외국민· 외국인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주2)}	폐쇄인정 ^{주4)}
	재외국민· 외국인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모)+실종 등 서류 ^{주1)}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주2)}	
	재외국민·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본인)+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주2)}	
	실종 등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실종 등 서류 ^{주1)}	폐쇄인정 ^{주4)}
	실종 등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본인)+실종 등 서류 ^{주1)}	
	이혼소송으 로 관계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주민등록등본 ^{주3)}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5)} +이혼소송·심판 확인가능 서류	
	사실상이혼 등으로 관계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주민등록등본 ^{주3)}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5)} +민법상 친족의 사실확인서+본인 소명서	
	오래전부터 관계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5)} 민법상 친족의 사실확인서+주민등록초본 ^{주6)} +본인 소명서	

결혼	부	모	제출서류	비고
기혼	배우자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단절		혼인관계증명서(본인)+주민등록등본 ^{주3)}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5)} +본인 소명서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으로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본인)+주민등록등본 ^{주3)} +이혼소송 심 판 확인가능 서류+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5)}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으로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본인)+주민등록등본 ^{주3)}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5)} +민법상 친족의 사실확인서+본인 소명서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본인)+혼인관계증명서(본인) ^{주7)}	
	배우자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본인)+실종 등 서류 ^{주1)} +본인 소명서	
	배우자가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본인)+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주2)}	

- ※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발급 '정부24(www.gor.kr),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 ※ 관계단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서식 4】 가구원 관계단절 본인 소명서는 반드시 모두 제출
- ※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 인정)

주1) 실종·수감 등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신고 신고증(법원),
군복무확인서(군부대),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법원), 거주불명자등(초)본, 수용증명서(교정기관)

주2)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 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 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
거소사실증명원,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포함))

주3) 주민등록등본: '본인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필요

주4)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재되어, 사망 확인 가능

주5)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부모 모두로부터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본인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발급)

주6)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주7)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

【붙임 3】 제출서류 발급 방법

목 록	발급방법
주민등록 등·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 주민센터(무인민원발급기)
가족관계증명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 주민센터(무인민원발급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하면 부, 모 함께 나눔 (형제, 자매까지 모두 나오려면 부(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 관련 사례에 해당될 경우엔 【붙임2】 참조하여 발급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그인 → 방문자별 맞춤메뉴(개인) →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 조회 및 발급 · 스마트폰 앱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건강보험”앱 설치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민원서비스 이용 · 주민센터(무인민원발급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용)이력 내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일반근로자 공인인증서 로그인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선택[보험구분 : 고용/ 조회구분 : 상용] 후 조회 → 이력 내역서 발급(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신청) (상세문의 : 1588-0075)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력서 출력 누른 후 해당 내용이 없다는 이력내역서 첨부 (반드시 인적사항과 발급 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졸업·제적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민원포털 정부24 (www.gov.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을 발급 · 주민센터(무인발급기) · 해당학교 내 증명서 발급·관리부서 등

※ 무인 발급기 이용 제출서류 발급 시 지문인식 절차가 필요하므로 당사자 (본인·부·모·배우자 등)의 방문이 필요합니다.